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61
----------	-----

2021. 7. 20.(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1년 6월 30일

다. 회부일자: 2021년 7월 2일

라. 상정일자: 2021년 7월 9일

(제3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박승렬)

가. 제안이유

- 직속기관 하부조직 신설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직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속기관 하부조직 신설 및 기능 확대

1)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 분원(환경교육센터) 신설 (안 제9조, 제10조의2, 별표 1)

2)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 학생놀이 교육 및 학부모 연수 업무 신설 (안 제13조, 별표 1)

3)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 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 설치에 따른 주소 추가 표기 (안 제32조)

○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 보완

- 행정국 및 직속기관 소관 업무 일부 수정 등 (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46조의8)
-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별표 1로 통합 등 (안 제16조의2, 제19조의2, 제22조의2, 제25조의2, 제37조의2, 제46조의5,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분원(환경교육센터) 등 하부조직 신설을 반영하고, 직속기관 분원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별표를 통합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9호 중 “이양”을 “위임”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생태환경교육”을 “환경교육”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제6호 중 “생태환경교육”을 “환경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생태환경”을 “환경”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분원) 자연과학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3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학생 놀이 교육에 관한 사항
- 6. 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

제16조의2 중 “별표 2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19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 중 “별표 4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별표 5와”를 “별표 1과”로 한다.

제32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구정보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충주시 사직산 6길 20에 둔다.

제37조의2 중 “별표 7”을 “별표 1”로 한다.

제46조의5 중 “별표 8”을 “별표 1”로 한다.

제46조의8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별표 8은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2항, 제10조의2의 개정규정 및 별표 1의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환경교육센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2. 별표 1의 충청북도단체교육연수원 북부분원 중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

[별표 1]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직속기관	분원(관) 명칭	위치	관련조문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u>환경교육센터</u>	<u>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번길 17</u>	제10조의2 관련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북부분원	충청북도 청주시 증양탑면 청단산업로 670 <u>충청북도 청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u>	제13조의2 관련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미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제16조의2 관련
	진천문학과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충청북도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제22조의2 관련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충청북도국제교육원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제25조의2 관련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중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제37조의2 관련
충청북도해양교육원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9길 29	제46조의5 관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삭 제</p> <p>4. ~ 17. (생 략)</p> <p>18. 삭 제</p> <p>19. 행정권한 <u>이양</u> 및 위탁에 관한 사항</p> <p>20. 삭 제</p> <p>21. ~ 28. (생 략)</p>	<p>제7조(행정국) ① ----- -----.</p> <p>4. ~ 17. (현행과 같음)</p> <p>19. ----- <u>위임</u> ----- -----</p> <p>21. ~ 28. (현행과 같음)</p>
<p>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과학·수학·영재·<u>생태환경교육</u>의 내실화를 조장·지원하여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이하 “자연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② (생 략)</p>	<p>제8조(설치) ① ----- ----- ----- <u>환경교육</u>-----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원장) (생 략)</p> <p><u><신 설></u></p>	<p>제9조(원장)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분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분원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u></p>
<p>제10조(업무) 자연과학교육원장은</p>	<p>제10조(업무) -----</p>

현행	개정안
<p>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5. 삭제</p> <p>6. 과학·수학·융합·영재·발명·<u>생태환경교육</u> 진흥에 관한 사항</p> <p>7. ~ 9. 삭제</p> <p>10. 과학, 수학, 융합, 발명, 영재 및 <u>생태환경</u>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p> <p>11. (생략)</p> <p><u><신설></u></p> <p>제13조(업무) 연수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5. (생략)</p> <p>제16조의2(분관) 교육도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2</u>와 같다.</p> <p>제19조의2(분원) 문화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3</u>과 같다.</p> <p>제22조의2(분원) 수련원에 두는</p>	<p>-----.</p> <p>6. ----- --<u>환경교육</u>----- ----</p> <p>10. ----- -- <u>환경</u> ----- -----</p> <p>11.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분원) <u>자연과학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p> <p>제13조(업무)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학생 놀이 교육에 관한 사항</u></p> <p>6. <u>학부모 연수에 관한 사항</u></p> <p>7.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16조의2(분관) ----- ----- <u>별표 1</u>과 ----- --.</p> <p><u><삭제></u></p> <p>제22조의2(분원) -----</p>

현행	개정안
<p>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4</u>와 같다.</p>	<p>----- <u>별표 1과</u> ----.</p>
<p>제25조의2(분원) 국제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5</u>와 같다.</p>	<p>제25조의2(분원) ----- ----- <u>별표 1과</u> ----.</p>
<p>제32조(설치) ① (생략)</p> <p>② 연구정보원은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에 둔다. <u><단서 신설></u></p>	<p>제32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다만,</u> <u>연구정보원의 일부는 충청북도 청주시 사직산 6길 20에 둔다.</u></p>
<p>제37조의2(분원) 중원교육문화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7</u>과 같다.</p>	<p>제37조의2(분원) ----- ----- <u>별표 1</u>-----.</p>
<p>제46조의5(분원) 해양교육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8</u>과 같다.</p>	<p>제46조의5(분원) ----- ----- <u>별표 1</u>-----.</p>
<p>제46조의8(업무)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p> <p>1. ~ 3. (생략)</p> <p><u>4. 진학상담 및 진학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u></p> <p>5. ~ 9. (생략)</p>	<p>제46조의8(업무)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5. ~ 9. (현행과 같음)</p>
<p>[별표 1]</p>	<p>[별표 1]</p>

현행	개정안
----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의 명칭과 위치
(제13조의2 관련)

명칭	위치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670

[별표 2]

충청북도교육도서관 분관의 명칭과 위치
(제16조의2 관련)

명칭	위치
미원교육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진천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별표 4]

충청북도학생수련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

직속기관 분원(관)의 명칭과 위치

직속기관	분원(관)명칭	위치	관련조문
충청북도 자연과학 교육원	환경교육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80 번길 17	제10조의2 관련
충청북도 단재교육 연수원	북부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첨단산업로 670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새마을길 10	제13조의2 관련
충청북도 교육도서관	미원교육 도서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단재로 2494-1	제16조의2 관련
	진천문화관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사송3길 17	
충청북도 학생수련원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제22조의2 관련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길 79-14	
충청북도 국제교육원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제25조의2 관련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충청북도 중원교육 문화원	중원교육 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제37조의2 관련
충청북도 해양교육원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지9길 29	제46조의5 관련

[별표 2] <삭 제>

[별표 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의2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제천분원</td> <td>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td> </tr> <tr> <td>옥천분원</td> <td>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p>[별표 5] <삭 제></p>			
명 칭	위 치										
제천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 141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93										
옥천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용방1길 79-14										
<p>[별표 5]</p> <p>충청북도국제교육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p> <p>(제25조의2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충주분원</td> <td>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td> </tr> <tr> <td>북부분원</td> <td>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td> </tr> <tr> <td>남부분원</td> <td>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td> </tr> <tr> <td>중부분원</td> <td>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명 칭	위 치										
충주분원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대로 50										
북부분원	충청북도 제천시 죽하로 13										
남부분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75										
중부분원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농다리로 536-43										
<p>[별표 7]</p> <p>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p> <p>(제37조의2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중원교육 도서관</td> <td>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중원교육 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p>[별표 7] <삭 제></p>					
명 칭	위 치										
중원교육 도서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창전길 219										
<p>[별표 8]</p> <p>충청북도해양교육원 분원의 명칭과 위치</p> <p>(제46조의5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명 칭</th> <th style="text-align: center;">위 치</th> </tr> </thead> <tbody> <tr> <td>제주분원</td> <td>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괘자9길 29</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괘자9길 29						
명 칭	위 치										
제주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괘자9길 29										
		<p>[별표 8] <삭 제></p>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0.4.7.] [대통령령 제30601호, 2020.4.7. 일부개정]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제6조(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 5. 8., 2018. 2. 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 환경교육진흥법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2., 2020. 5. 26.>

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교육 분야와 관련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